

# 방문판매계약의 취소

최은순(변호사, 여성법률상담센터 소장)



유명 모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 다이어트 약품을 방문판매로 샀습니다. 처음에는 굶지 않고도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했으며, 10킬로그램 감량을 책임진다고 하기에 4개월 분량의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확실한 감량과 함께 다시 찌지 않는 체질로 체질개선까지 해준다는 말에 450만원이나 하는 거금을 들였으나, 조금만 먹어도 위산이 넘어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매일 영양사와의 통화를 한 후에 어떤 약을 어떤 방법으로 먹을지를 지시 받았는데, 거의 매일 굶기를 강요하는 등 처음과는 다른 내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회사에 전화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모두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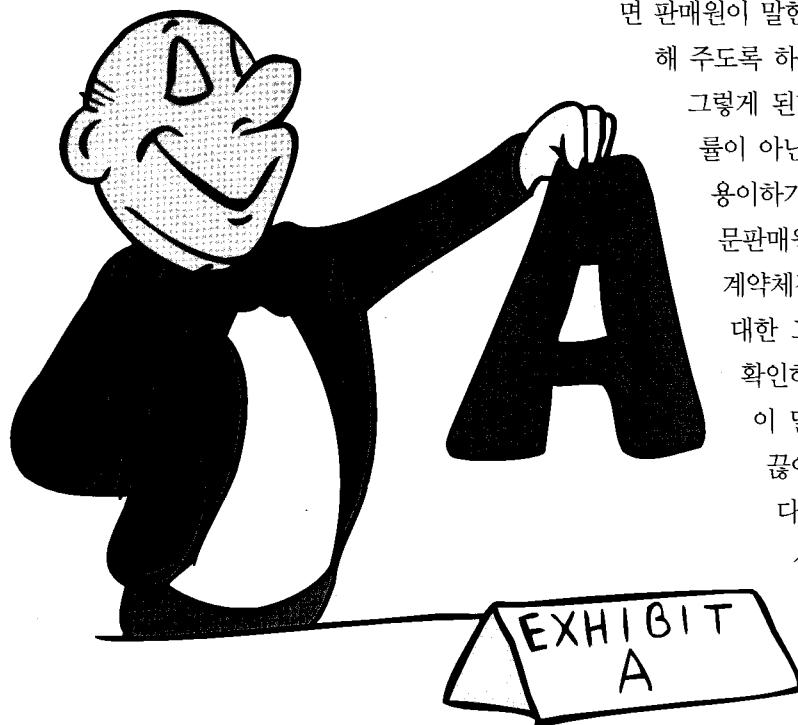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셨는데 건강보조식품이 아닌가 합니다. 약의 효과가 없고, 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이며 계약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약값에 대해서는 질문자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상품의 선전, 홍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철회의 경우에도 귀하가 4개월 분량 중에 이미 상당량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그러한 과장의 정도가 거래에 필요한 신의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법적 대응의 경우에 소송기술상 입증의 어려움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판매와 달리 소비자의 적극적인 수요라기보다는 판매자의 권유나 감언이설에 의하여 소비욕구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의 본질을 깨뚫어보아 계약체결일이나 상품인도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기간 동안의 숙려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cooling-off제도). 즉, 위 법상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철회의사를 표시하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일이나 상품인도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기간 동안의 숙려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oling-off제도). 즉, 위 법상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철회의사를 표시하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 판매원이 말한 중요내용을 계약서 내용에 부기  
해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률이 아닌 민법상의 계약해제 혹은 취소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법률상 방  
문판매원은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 및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해약조건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원들은 목적  
이 달성된 뒤 수당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  
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  
시 확보해두시고 명함도 챙겨놓으  
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이  
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품에 해  
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화장품이나 약품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소모적인 성격의 상품인 경우에는 위 법률의 적용  
이 어려우므로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민사적인 대응 외에  
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나 이러한 법률적 대응의 한계  
를 인식하고 계약서명 전에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  
한 물품인가 주변 분들과 상의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입을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  
니다. ■■■